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복지문화 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박왕규 의원 등 5명
- 발의일자: 2022. 11. 04.(금)
- 회부일자: 2022. 11. 04.(금)
- 검토기간: 2022. 11. 07.(월) ~ 11. 11.(금)

2. 제정이유

-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점검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 나.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 다.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관련 업무를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구청장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장애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연도	빈도(건)	비율(%)
2000년 이전	12	0.9
2000~2004년	11	0.8
2005~2009년	19	1.5
2010~2014년	211	16.2
2015년 이후	1,047	80.5
전체	1,300	100

출처: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표 3-18(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 가해자의 27.9%가 장애인 보호직종에 근무하고, 이중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38.4%에 달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책적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됨.
- 또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은 장애인 보호 및 복지향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 제57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정조례안의 장애인의 범위는 법 제2조를 따르고 있으며, 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③ <생략>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신설 2020. 12. 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

- 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